

39. 대구광역시 과학기술진흥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심 사 보 고 서

1. 심사경과

- 발의일자 : 2021년 10월 27일
- 발의의원 : 이태손, 김원규, 김지만, 송영헌, 윤영애, 이만규,
이시복, 이영애, 하병문, 황순자 의원
- 회부일자 : 2021년 11월 1일
- 상정일자 : 제287회 대구광역시의회 정례회
제6차 경제환경위원회(2021년 12월 17일), 원안가결

2. 제안설명 요지(제안설명자 : 이태손 의원)

- 제안이유
 - 지역 과학기술 진흥을 효과적이고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과학기술진흥 전담조직의 지정과 관련 업무를 규정하고, 관련 법 개정 및 대구시 현실을 반영하여 조례를 정비하고자 함.
- 주요내용
 - 성과관리의 폐지 및 과학기술진흥사업 관리의 신설(안 제5장)
 - 과학기술진흥 전담조직의 지정(안 제19조)
 - 관련법 개정 및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정비

3. 검토보고 요지(보고자 : 전문위원 이충호)

□ 개정취지 및 적법성 여부

- 본 개정 조례안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지역과학기술진흥 전담 조직 지정 및 역할 정립 권고를 조례에 반영하고, 관련법 개정과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현행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서 내용이나 체계는 상위법령 등에 부합함.

□ 주요 검토사항

- 안 제5장은 현행 성과관리 뿐만 아니라 과학기술진흥사업 전반에 대한 기획, 조사·분석, 평가, 관련 DB구축 등을 포괄하는 과학기술진흥사업 관리로 변경하였음.
- 안 제17조는 시의 재정이 수반되는 과학기술진흥사업 관리의 목적이 투자의 효율성과 책임성을 향상시키는 것에 있음을 규정하였음.
- 안 제19조는 시장은 과학기술진흥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재단법인 대구테크노파크를 전담조직으로 지정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으며, 전담조직이 과학기술진흥 종합계획의 수립 지원 및 관련 정책 연구, 성과조사·분석, 관련 DB구축·관리(과학기술종합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) 및 환류 체계 구축 등의 사업을 할 수 하도록 수행범위를 규정하였음.

□ 검토결과

- 본 개정 조례안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지역과학기술진흥 전담 조직 지정 관련 권고*를 조례에 반영하고 기타 관련법 개정 및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서, 상위법령인 「과학기술기본법」 등과 내용 및 체계상 부합한 것으로 판단됨.

*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지역과학기술진흥과-2249(2019.10.11.)

-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(KISTEP)의 ‘2020년 지역 과학기술혁신 역량평가’에 의하면 우리시의 과학기술혁신 역량은 전국 17개 시·도 중 하위 수준이며,

< 2020년 지역 과학기술혁신 역량지수 >

지역	경기	서울	대전	경북	울산	충북	부산	충남	인천	전북	경남	광주	강원	전남	대구	세종	제주
지수	22.8	20.2	18.1	11.0	9.9	9.8	9.6	9.5	9.0	8.7	8.6	8.4	7.9	7.9	7.7	6.6	6.1

-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‘지역별 국가연구개발사업 집행액 자료’²⁰⁾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지방의 국가연구개발사업 집행액은 증가추세에 있지만 대구의 경우 ‘18년 3.2%, ‘19년 3.1%, ‘20년 3.0%로 답보 내지 감소 추세에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바,
- 본 조례 개정을 계기로 과학기술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조직개편, 기업과 대학과의 유기적 협조체제 강화, 미래 선도형 과학기술에 대한 체계적 투자 등이 이뤄져야 할 것으로 보이며,
- 특히, 과학기술진흥 전담조직을 지역 R&D 투자와 성과 등에 대한 단순 조사·분석을 넘어, 지역 R&D 정책 수립과 실행의 교두

20)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정희용(고령·성주·칠곡) 국회의원에게 제출한 자료 (대구일보 ‘21. 9. 29. 4면 발췌)

보로 활용할 수 있어야 할 것임.

4. 질의 및 답변 요지

질의요지	답변요지
해당	없음

5. 토론요지

- 해당 없음.

6. 수정안 요지

- 해당 없음.

7. 심사결과

- 원안가결(출석위원 전원찬성)

8. 소수의견 요지

- 해당 없음.

9. 기타 필요한 사항

- 해당 없음.